

Q & A

우리 협회 교육부 문의사항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질의(Q)·회시(A) 형식으로 노동부와 우리 협회 홍종민 전문위원의 자문을 얻어 연재합니다.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공사진행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가 징구하는 바 타당한지 여부

Q

○ 공사진행중에 정기적으로(기성고 청구시)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서와 증빙서(영수증 등)를 징구하는 바 타당 여부

〈답설〉 타당하다

이유 : (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제9조(확인 등)의거 발주자는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나) 발주자의 검수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현장정리돈(살수비용 등), 인건비 등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 지도, 감독하기 위함이며

(다) 안전관리비 사용에서의 항목 해당여부의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므로 타당하다.

(라) 기성고 청구시 제출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증빙은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 자료임

〈을설〉 관계규정에 배치된다

이유 : (가) 규정에 배치된다. 공사종료 후에나 사용내역서만 징구할 수 있다.

(나) 안전관리비 사용에서의 해당 여부

의 판단은 지방노동부 소관업무이다.

A

○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원칙적으로 공사종료 후에 안전관리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공사진행중에 이와 증빙서를 제출받는 것이 수급인의 기성고 청구시 이의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자료일 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사용관리에 대한 수시 확인의 일환인 지도감독 차원에서 행하여진다면 공사진행중(기성고 청구시)에라도 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건안 68322-217, '93. 12. 9)

안전관리비 집행 전에 발주처로부터 사전 허가를 득하고 집행하여야 하는지

Q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1994년 10월 21일) 고시 제94-45호 제2장 제10조(확인) ①, ②항에 따른 사용중 및 공사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는 의무사항이 있는데 안전관리비 집행 전 발주처로부터 사전 허가를 득하고 집행하여야 하는지, 당현장은 발주처로부터 신청(시공사)→검토(발주처)→집행절차를 밟고

있는데 안전시설의 설치 및 수량 등을 제한 또는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받아 발주처의 허가된 사항만 집행하는데 시공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는 없고 발주처의 허가사항만 실시하는데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시공사에서 집행하고 발주처에서 요구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 목적 외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감액 실시하면 되는 것인지?

A

- 안전관리비의 사용중 및 공사종료 후에 그 사용내역서를 발주자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감액조정 등을 위한 확인사항으로서 수급인이 집행 전 발주자에게 사전허가를 득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안전관리비가 발주처에서 관리될 수 없음
-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 감액조정하는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여야 함.

(건안 68307-288, '94. 11. 8)

안전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을 공사종료시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하는지

Q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구입한 물품(예 : OHP, VTR, TV

등 안전교육기자재, 안전관련책자, 소화기, 방송기자재 등)을 공사종료시 발주처에 반납해야 되는지

A

- 안전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물품을 발주처에 반납할 의무는 없음
(산안 68307-485, '94. 12. 19)

개정된 고시(94-45)에서 안전장구 구입비용이 축소된 것인지

Q

- T/L 굴착공사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인건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비 항목 이외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없고, 안전시설비도 연차공사로 초기에 집행하여 유지관리만 하면 준공시까지 사용할 수가 있으며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비 항목에 집중 집행되어 기존의 제91-57호 고시 30% 미만 전액을 안전장구비로 집행하여도 부족한 실정인데 20% 이하 사용은 불가하다고 생각됨

A

- 종전의 고시(제91-57호)에서는 안전장치·안전장구 및 안전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30% 미만으로 확정되었으나 현행 개정고시(제94-45호)에서는 안전시설비·안전장구 및 안전진단비 등(각 40%·20% 및 20% 이하)으로 구분하여 오히려 그 집행범위가 확대되었음

(건안 68307-288, '94. 11. 8)